#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

2018. 2.



# 목 차

1.	목적1
2.	용어의 정의1
3.	사업 운영체계2
4.	추진절차3
5.	사업계획의 공고 및 접수4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6
7.	현장실사7
8.	지원금 지급7
9.	사후관리8
10.	기타9
11.	서식11

#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운영 지침

제정 2017. 4. 10. 개정 2017. 7. 12. 개정 2018. 2. 09.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1 목적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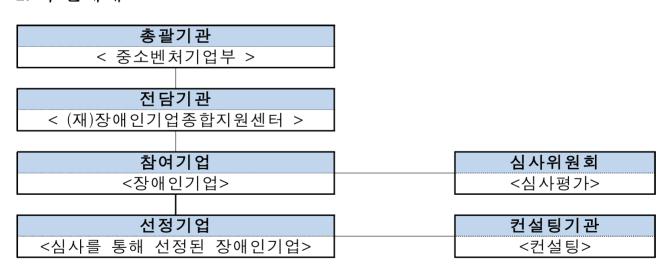
# 2 용어의 정의

-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①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국내 인증획득지원"(이하 "인증지원"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제품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해 인증획득비용을 일 부 지원하기로 결정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 4.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인증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6.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인증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 7. "심사위원회"란 "인증지원"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 8. "심사평가"란 "참여기업"의 지원 신청서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검토·심 의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절차를 말한다.
- 9. **"참여기업"**이란 "인증지원"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중기청"의 장애인기업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10. "선정기업"이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 11. "현장실사"란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표 항목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7.7.12.>
- 12. "지원금"이란 "선정기업"에 지급되는 인증 획득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을 말한다.
- 13. "인증지원신청" 이란 "참여기업"이 "인증지원"을 지원받기 위해 "센터"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 14. **"인증지원금 지급신청"**이란 "선정기업"이 인증획득 후 소요비용에 대해 "센터"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 3 사업 운영체계

### 1. 추진체계



### 2. 역할

- 1) 총괄기관 "중기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 ② 사업 센터 관리·감독
- ③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 2) 전담기관 "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증지원"의 세부계획 수립,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② "인증지원"의 연간계획 수립
- ③ "인증지원"의 "선정기업"현장실사, 지원효과 평가, 사후관리<개정 2017.7.12.>
- ④ 사업종료 후 "인증지원"의 "선정기업" 성과 관리
- ⑤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 3)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지원금"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평가"수행
- ② "인증지워"개선 방안에 관한 조언
- 4)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증지원"에 대한 인증지원 신청서 제출
- ②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 5) "선정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인증지원"에 대한 인증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 ② "인증지원"의 현장실사 및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개정 2017.7.12.>

# 4 추진절차

5

내용	비고
	, ,
사업공고	] : 센터 ;
인증지원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 센터
선정심사	심사위원회
지원대상 선정·통보	센터 ⇒ 선정기업
현장실사<개정 2017.7.12.>	센터 ⇒ 선정기업
인증획득	선정기업
-	
인증지원금 지급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센터
-	
지원금 지급	센터 ⇒ 선정기업

# 사업계획의 공고 및 접수

### 1. 사업계획의 공고

- 1)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 ①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 ② "인증지원"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역
  - ③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신청자격

- 1)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단,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지원금 요청 시 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는 지원가능하다.
-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건은 "인증지원"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① 본 사업을 지원 받은 인증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 지원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 사업 신청 제한
  - ② 휴·폐업 중인 기업
  - ③ 지원금 지급 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 ④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신규 인증 획득건만 가능)
  - ⑤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최근 3년간('15년 ~ '17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 (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평가 시 감점 및 후순위 배정)

#### 센터 직접지원 사업

-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창업점포지원사업
- ④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⑤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⑥국내인증획득지원
  -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지원가능 (ex:매출실적, 계약실적, 수출실적, 지식재산권등록 등)

### 3. 신청기간

- 1) "인증지원"의 신청은 공고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 2) "인증지원"의 공고는 분기별(2, 5, 8월)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예산소진시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한다.

### 4. 지원범위

- 1) 당해년도('18.1.1.~'18.10.31) 인증 획득 건(획득 진행 건은 획득 마감기한 10/31까지 획득을 완료 해야함)에 대해 ISO 인증, 기술개발제품, 조달가점, 법정 의무 인증 등 국내 인증에 대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부가세 제외)<개정 2018.2.9..>
- 2) 총 소요비용의 80% 한도로 지원하며(자부담률 20% 이상) 기업규모별 차등 지원(지원한도 : 소기업 80%, 중기업 70%)
- 3) 인증에 따라 지원금액이 상이하나 구분별 지원한도를 넘지 않는다.
- 4) 지원횟수는 기업 당 지원한도(300만원) 내 2건으로 제한한다.<2018.2.9.>
- 5) "지원금"의 한도는 아래 제시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7.7.12.>

구분	인증마크명	지원금 액	지원범위
ISO인증	ISO 9001, 14001, 22000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NET, NEP, GS, 우수조달제품, 녹색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300만원	인증비
조달가점, 법정의무 인증	KS, 환경마크,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한도	시험비 컨설팅비
기업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100만원 한도	

### 5. 인증지원 신청서 접수

### 1) 접수

- ① "참여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인증지원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참여기업"은 ①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

### 2) 반려

① "센터"는 인증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 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6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 심사위원회의 구성

- 1) "센터"는 "인증지원"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2) "심사위원회"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①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 ②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 ③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 ④ 관련분야(기술, 경영, 조달 등) 박사학위 소지자
  - ⑤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 ⑥ 장애인 관련 단체·기관의 부장급 이상인 장애인<개정 2017.7.12.>
  - ⑦ 관련 업종 장애인기업 대표<개정 2017.7.12.>
  - ⑧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3) "센터"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 ②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또는 3년 내 재직하였던 자
  - ③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 심사위원회의 운영

- 1) "센터"는 공고기간 "참여기업"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 2) "센터"는 심사일정, 심사기준, 심사방법, 심사지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심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심사위원회"는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인증

지원신청서류의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인증지원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참여기업"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4) 심사위원은 "참여기업"의 인증지원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 5) 예산범위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 6) "심사평가"시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 7 현장실사

### 1. 현장실사 대상<개정 2017.7.12.>

- 1) "센터"는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대해 사업장 확인, 사업기간 내 인증획득 가능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 현장실사 점검표를 통해 점검할 사항은 아래 항목과 같다.
- ① 사업장확인(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일치여부)
- ② 대표자 근무 여부
- ③ 제품 개발능력(조직이나 기술인력 보유여부)
- ④ 시설현황(공장, 연구소 보유 여부)
- ⑤ 사업기간 내 제품인증 획득 가능성
- ⑥ 획득하려는 인증과 기업 주 업종과의 연관성 등
- 3) 현장실사 점검결과 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판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8 지원금 지급

### 1. 선정기업 통보

"인증지원"의 "참여기업"은 "센터"의 "심사평가"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2. 인증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

#### 1) 접수 및 지원금 지급

- ① "선정기업"은 인증 획득 후 15일 이내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인증지원 금 지급신청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선정기업"은 ①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접수처로 우편 접수 하여야 한다.
- ③ 컨설팅기관 대행 진행 시 반드시 컨설팅 수행일지를 제출하여야 하며, 컨설팅 수행일지의 미제출 혹은 작성 내용이 미흡할 시 "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컨설팅업체 비용 허위 지급 시 모든 지원금은 지급불가하며, 추후에라도 컨설팅업체 리베이트 여부가 확인될 시 지원금을 모두 환수 조치하고, 추 후 "센터"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재한다.
- ⑤ "센터"는 매월 30일(휴일일 경우 익일) "선정기업"에서 제출한 인증지원금 지급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센터"의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⑥ 인증획득기한('18.10.31)까지 인증 미 획득 시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 \*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인증획득이 지연될 시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기한을 30일 내로 연장할 수 있다.
- ⑦ "선정기업"은 인증 획득 후 사업마감기한('18.10.31.)까지 지원금지급신청서 류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은 취소된다.<개정 2018.2.9.>
- ⑧ ①항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지원금 지급 취소

- ① "센터"는 1)-①항에서 정한 기한 이후 도착한 지원금 지급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 ② "센터"는 유효하게 접수된 신청 서류에 대해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 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 9 사후관리

### 1. 사후지원

- 1) "인증지원" 종료 후 "센터"는 "선정기업"에 지속적인 추가지원안내, 지원시 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인증지원"을 통한 매출확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 2) "센터"가 1)항의 사후지원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 3) "센터"는 "선정기업"의 "인증지원"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책자 (유인물)을 제작 배포할 수 있다.

### 2. 성과관리

- 1) "선정기업"은 "인증지원" 후 "센터"의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2) "센터"의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에는 매출실적, 인증획득실적 등이 포함된다.

### 3. 제재조치

- 1) "센터"는 "선정기업"이 "지원금"의 지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선정기업"에 대해 "센터"의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 ①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 인증획득 건에 한해 타 기관 및 단체의 인증 획득 비용을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 ②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10 기타

### 1. 비밀유지

"센터"는 "인증지원"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정보, 개인정보, 사업관련내용, 예산 집행관련 사항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 2. 서류보관

"센터"는 "인증지원"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기 청" 등의 관련자료 제출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 3. 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2	당애인기업	인증	획득 지	원사업	선정	명가표	
지원인증		업체명 (지원자명)			기업규모	소기업   중기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고용기여도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포용시에포	5	4	3	2	1	
정량 평가 (20점)	최근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없음	1회	2회	3호	4회 이상	
	수혜횟수	5	4	3	2	1	
		3년 미만	3~5년	5~7년	7~10년	10년 이상	
	기업업력	5	4	3	2	1	
		분야		세부	내용		
	기술기반 업종여부	기술기반 제조서비스			통신, 화공·섬유, 분야의 제조·서		
	(5점)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분야의 S/W(시스템) 및 설계기술				
	활용전략 (20점)		기업(제품)	인증을 통한	사업화 전략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기업(제	품) 인증 등록	필요성		
	획득필요성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정성		20~17	16~13	12~9	8~5	4~1	
평가 (80점)		기	_ 업(제품) 경쟁	력, 전문성, <b>7</b>	기술개발인력	등	
(00 🖽 )	기업경쟁력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20~17	16~13	12~9	8~5	4~1	
		해당 기업(저	□ ∥품) 인증획득	· 지원을 통힌	! 매출증대, 시	사업화가능성	
	지원효과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점)	20~17	16~13	12~9	8~5	4~1	
기	·점(10점)	□ 중증 장애인 여부(4점) □ 센터 교육 수료 여부('17년 이후 수료만 인정)(3점)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3점)					
심의점	수 합계 (110)			(	)점		
종합	심의 의견						

#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제출서류

	인증획득지원	신청서류	구분
1	<ul> <li>지원사업 신청서</li> <li>지원사업 계획서</li> <li>개인정보활용동의서</li> <li>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li> </ul>	· 센터 지정양식	
2	· 사업자등록증		필수
3	· 장애인기업확인서		
5	· 복지카드 · <u>최근3년</u>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 할 서류(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 사본제출	
6	· 종업원 고용 관련 증빙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등	· 사본제출 · *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제	
7	· 센터교육수료증	출시에만 평가항목에 점수 반영 (공고문 선정평가표 참고)	해당시
8	· 장애인증명서(중증여부확인용)		M 6 M
9	·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공고 문의 센터 직접지원사업 목록 확인)을 통해 발생한 매출향상, 지식재산권 등 록 등 실적 증빙 서류	· 사본제출  *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을 5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만 해당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	
<u>인</u>		사 후 지원대상 선정 시(개별통보) □	제 출)
1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완료보고서 ·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팅기관 대행 시) · 설문조사서	· 센터 지정양식	
0	· 서약서	· 전자세금계산서	필수
3	· 지출증빙자료 	· 이체확인증(입금내역서) ·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4	· 획득 인증서	* 개인명의 통장 불가 · 사본제출	

[표지]

접수일자	2018.	•	•
접수번호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신청서 및 지원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지미) 징미인기입종합지원센티

접수번호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신청서									
				신청자	내대표자) 개요					
대표기	자명*		생년월일	일*			성 별*		□ 남	□ 여
		주된 장애*			중복 장애		, ,		주된 경	당애등급*
장애 (등		<ol> <li>지체장애</li> <li>시각장애</li> <li>청각장애</li> <li>언어장애</li> </ol>	5. 지적장애 6. 뇌병변장이 7. 자폐성장이 8. 정신장애		9. 신장장애 10. 심장장애 11. 호흡기장애 12. 간장애		면장애 루·요루장야 전증장애	H	(	)급
휴 다	· 폰*				이 메 일*					
					기업 개요					
기업-	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	기업						
장애인	!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징	최근 등록날짜 :	ļ	크 월	Ó	<u>j</u> )	
업 처	명*				사업개시일*		년	월	] 일	
사업지					총 직원수*	(	, •	_	상애인	( )명
법인등	-				(대표 제외)	장이	이 포함	직 <sup>.</sup>	원 수*	
업종(k				주요 생산품*						
사업장	수소*	2046					ls.			
매출	≤ OH∗	2016 <sup>1</sup>			2017년	(nlol)	2018년(예상치)			
수 출			(만원) (만원)						(만원) (만원)	
Te		개인기업종합지원	1 1	유실 인						
					 원신청 개요		<u>'</u>			
인 증	등 명*				인증획득		□ 1. 단독	 추진		
인증 예정		년	월 일		방법*	□ 2. 컨설팅기관 대행				
	_	합계*		지원	원 신청금액(부가세	제외)			TL+II	H Ckrov+
인증	회드	(A+B+C+D)	인증비(A	)*	시험비(B)*	7	过설팅비(C)	*	~[^]·	부담(D)*
예상				(원)	) (원	1)		(원)		(원)
		(원)			신청하고자 하는 지 비즈,/메인비즈,/벤처			원)		액 제외한 부담금액
성명*		부서/직위*								
담당자	전화*				핸 드 폰*					
2]]	팩스*	다 (-1)(크) -1) 스) -	1시 조귀 귀 시	וו בו	이 메 일*		-) A) A ->	1 =1 =	1,1-1	
상기	와 같 <sup>©</sup>	이 (재)장애인기	업종압시원	센터의	의 「국내 인증획	득」	지원을 신	인정입 <b>년</b>	발니나. <b>월</b>	일
					신청인 :				(서명 및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별지 제2-②호]

#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계획서 아래 내용은 인증획득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작성요령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업소개

▶ 기업현황 / 사업 개요	
▶ 인증 기업(제품)의 경쟁력	
▶ 보유인증, 기술, 제품, 콘텐츠 소개	

# 2. 인력현황

총 인력현황	명								
연구개발직	명	(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사무 · 영업직	명	생산.일	용직		명	기	타		뗭

# 3.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월)	사업규모 (소요자금)	참여기관	사업화현황

# 4. 주요 인증 등록현황

인증명칭	인증번호	인증획득일	시험기관	인증기관

# 5. 인증획득 진행계획

7  Hki    O	추진일정								비고			
개발내용	1	2	3	4	5	6	7	8	9	10	11	(결과물)
1. 인증 내용 검토(예시)					•							
2. 인증 의뢰(예시)						•	•					
						•						
							•	•				
								•				
									•	•		

6. 인승 능독(획늑) 필요성 
7. 인증 활용 계획
8. 기업(제품) 인증 등록(획득) 시 기대효과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의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 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업 지원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저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	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3 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어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운영을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	<u></u> 1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업정
2018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표지]

접수일자	2018.	•	•
접수번호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 The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 (지미) 징이인기입종합지원센티

접수번호

#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금 지급신청서

※ 지	※ 지원신청서 제출 후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개별통보)에 한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지	(대표자) 개요				
대표지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주된 장애*		중복 장애	,	,	주된 장	당애등급*
장애유 (등급		2. 시각장애 <i>6</i> 3. 청각장애 7	5. 지적장애 6. 뇌병변장애 7. 자폐성장애 8. 정신장애	10. 심장장애	13. 안면장 14. 장루· <i>s</i> 15. 뇌전증	요루장애	(	)급
휴 대	폰*			이 메 일*				
			J	기업 개요				
기업구	1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장애인	-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		년	월 일	<u>i</u> )	
업 체				사업개시일*		년 월		
사업자				총 직원수*		_	당애인	( )명
법인등록	-			(대표 제외)	장애인	포함 <b>식</b>	원 수*	
업종(KS				주요 생산품*				
Чно	2016년 2017년 2018년(예상치)						ti	
매 출	액*	2010	· (만원)	2011	(만원)		JE(-110	· <b>17</b> (만원)
수 출	-		(만원)		(만원)			(만원)
			인종	증획득 개요				
인 증				획득일자*		20 .	•	
인증번	<u> </u>							
소요비		합계(A+	-	인증비(A)*	시험	<b>Н (В)</b> *	컨설팅	[]비(C)*
(VAT A			(원)	(원)		(원)		(원)
-	성명*			부서/직위*				
	전화* 팩스*			핸 드 폰* 이 메 일*				
	-4		į	일부 서류				
2. 컨설 3. 설문	1. 인증획득 완료보고서 5. 지원금 지급을 위한 통장사본(기업명의) 2.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팅 기관 대행 시) 6. 세금계산서 7. 이체확인증(입금내역서) 4. 서약서 8. 인증서 사본							
상기:	 와 같(		 ]좆합지워세터의	의 「국내 인증획득	 = 지워금	 } . 지급을	을 신청힙	 }니다.
	1 6	1 (1) () () (-1)	10 8 166 1	1 1 1 2 5 ,	1 166	년	크 C O E 월	<sup>글 - [ - ]</sup> . 일
						_	_	
				신청인 :			(서명 또	: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	완료보
고시	너를 제결	출합니	다.					

2018년 월 일

업 체		(직인)
명	대 표 자	(주 간)
사업자번		
<u>ই</u>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첨부 1. 인증서 사본 1부.

- 2.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팅 기관 대행 추진 시)
- 3. 지원금 지급을 위한 기업명의 통장 사본 1부.
- 4. 인증소요비용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입금내역서)
- 5. 설문조사표 1부.
- 6. 서약서 1부. 끝.

### 1. 인증획득 정보

인증명칭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18		

# 2. 지원금 정산 내역

### 가. 총 비용 지출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집행금(A+B)
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 나. 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및 소요비용

(단위: 천원)

신청구분*	인증기관/	시험기관 <i>/</i>	컨설팅기관/
	인증비용*	시험비용*	컨설팅비용*
□ 단독추진 □ 컨설팅기관대행	(천원)	(천원)	(천원)

### 다. 세부집행내역

(단위: 천원)

번 호	세부지출내역	소요금액 (천원)	구성비	비고
1		(천원)	(%)	
2		(천원)	(%)	
3		(천원)	(%)	
4		(천원)	(%)	
5		(천원)	(%)	
6		(천원)	(%)	
합 계		(천원)	100.0 (%)	

\*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취득 후 인증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기재

# 3. 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인증획득기업 통장이어야 하며, 예금주는 기업명의만 가능(개인명의 불가)

### 4. 인증획득 추진일정 (년월표기, (예) 2018. 2 ~ 2018. 11)

인증명칭	준비기간	개발기간	시험기간	인증기간
	~	~	~	~

\* 준비기간 : 인증 필요 시기부터 인증소요비용, 컨설팅 결정 등 소요시기

개발기간 : 순수 제품개발기간(인증획득일과 중복, 선추진 관계없음)

시험기간 : 순수 제품에 대한 시험 완료 및 Debugging 기간

인증기간: 제3자 인증기관에서의 심사 및 공장심사 포함한 기간

# 5. 컨설팅 기관 개요(컨설팅 기관 대행 추진 시)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주소*		
담 당 자 <b>*</b>	연 락 처*	

#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기관		수행기간	~
지원기관		인증명칭	
진행일수	일	투입시간	약시간

일	자	수행업무내용	담당 컨설턴트
18.			
18.			
18.			
18.			
18.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일: 2018년 월 일

컨설팅기관: (인)

지원 기관: (인)

# 2018년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인증명칭	컨설팅기관	

1.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	----	------	-------	------	---	------

-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정책순회설명회

- ⑤ 기타
- 2.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절차	1)	2	3	4)	(5)
지원금액	1)	2	3	4)	5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품질수준 또는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l			

-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b>평가 만속도는? (대행주</b>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	불만족							
	5-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6.	6. 컨설팅기관의 선정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과 같이 ②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배정 ③ 기타										
6-1. 기타인 경우는?											
7. ſ	금번 지원사업	(인증획득)을 통해 발생	<u> </u>								
	구 분	애당 시 수혜 전(A)	원사업에 따라 발생할 기 수혜 후(B)	내요과 증감액(B-A)							
- 1		1 11									
ŀ	매 출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매 출 액 종업원수 (대표 제외)										
8.	종업원수 (대표 제외)	백만원 명 과정 중에 느낀 점, 5	백만원명	백만원명							
8.	<b>종업원수</b> (대표 제외) 금번 지원사업	백만원 명 과정 중에 느낀 점, 5	백만원명	백만원명							
	종업원수 (대표 제외) 금번 지원사업 기술하여 주	백만원 명 과정 중에 느낀 점, 5	백만원 명	백만원 명 한 인증에 대한 의견을							

☞ 끝까지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서 약 서

###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당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참가제한 사항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중복 수령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추후 참가제한에 해당하는 내용과 중복 수령 사실이 밝혀질경우에 기 수령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은 물론 향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모든 지원 사업에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_\_\_\_\_(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국내 인증획득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대상업체 현장실사 점검표

기 업 명		대	丑	자			
주 소		연	락	<b>X-I</b>	(HP)		
	GD GMP GR GS HACCP KC	□KS			(TEL) T □NEP		□녹색인증
시 정 인 승	그효율기자재 □메인비즈 □벤처기업 □성						· · 환경마크
점 검 자	(서명)	피 (기)	점 검	•			(서명)
		(* 11	3/11 11 1	3° 1)			
	점검 항목			확인	결과	(의견)	
1. 사업장확인(시	h업자등록증상 주소 일치여부)		[	_ 예		아니오	
2. 대표자 근무	여부			그 예		아니오	
3. 제품 개발능력	력(조직이나 기술인력 보유여부)		[	예		아니오	
4. 시설현황(공	장, 연구소 보유 여부)		[	□ 유		] 무	
5. 사업기간 내	제품인증 획득 가능성		_	예 획득		아니오 ! '17년	월)
6. 획득하려는 9	인증과 기업 주 업종과의 연관성			□ 적합	함 🗌	부적합	
7. 지원사업에 인증 및 이유	명시된 인증(19종) 외 추가 필요						
	컨설팅 기관 연계 필요성 서 컨설팅 기관 POOL 구성을 통해 필요한지 여부)						
9. 향후 추가 인	증 획득 계획						
10. 판로 개척을	위한 추가 지원 요청 사항						

현장 실	사 사진
현장 실사	종합 의견

# 2018년 국내인증획득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 업체개	요										
업체명					대표기	다명					
주 소					연 락	· 처					
□ 포기사	<u>о</u>										
위	와 같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므	<del></del> 로 승	인하여	주시기 [	 바랍'	니다	
								2018년	. <u>.</u>	월	일
				Ç	업 체 명 :	: :					
				대표자(임	담당자)명	:			(인	!/서!	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